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풍선류의 공중 투기 금지 근거 마련〉

■ 박지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174호)

2024. 1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풍선류의 공중 투기 금지 근거 마련	2

I. 제안경위

2024년 8월 23일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2024년 8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가 아닌 곳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하늘로 풍선을 날리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많아지고, 날아오른 풍선이 해양으로 떨어져 해양오염 피해의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임.

한편, 최근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헬륨 풍선을 하늘로 날리는 행위를 쓰레기 무단 투기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경우도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 없이 풍선류 등을 공중으로 쏘아올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관한 과태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풍선 날리기를 통한 피해 및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및 제68조제3항제2호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풍선류의 공중 투기 금지 근거 마련

개정안은 풍선류 등을 공중으로 쏘아올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4항, 안 제68조제3항제2의2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 ~ ③ (생략) <신설>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풍선류 등을 공중(空中)으로 쏘아올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적인 행사 개최 또는 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 또는 단순 실수에 의한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8조(과태료)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 (생략) <신설> 3. ~ 14. (생략)	제68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2. (현행과 같음) 2의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풍선류 등을 공중으로 쏘아올린 자 3. ~ 14.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제8조¹⁾),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제68조제3항제1호²⁾).

한편 공중에 풍선류 등을 쏘아올리는 경우 해당 풍선류 등이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모호한 점이 있어 현행법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개정안은 풍선류 등을 공중으로 쏘아올리는 행위를 폐기물 투기 행위의 하나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중으로 날아가는 풍선류 등은 이후 어떻게 버려지는지 관리가 되지 않아 떨어지는 위치에 따라 토양·해양 오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동 개정안은 환경 오염·생태계 파괴 예방의 취지가 있음.

다만, 동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비록 현행법상 폐기물 투기 적용 범위가 모호한 점이 있으나

1)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2)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개정안과 같이 하나의 조항에 폐기물 투기 금지의 일반 원칙을 규정하고, 풍선티 등을 공중으로 쏘아올리는 행위와 같은 개별 행위를 동시에 규정하는 것은 법 체계상 부자연스러운 점이 있음.

환경부 또한 쏘아올리는 행위의 대상인 풍선티 등이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자체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이 있으나, 풍선티 등이 폐기물이라 가정할 경우 현행법상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모두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개별 행위별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법 체계상 맞지 않고, 개정안과 같이 풍선티 등을 쏘아올리는 행위 금지 예외사유로 ‘단순 실수’를 규정하는 경우 예외 규정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 어려워 법 체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다는 입장임.

둘째, 동 개정안은 개별 행위를 금지하여 다수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 조치이므로, 풍선티 등을 쏘아올리는 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인지 등 명확한 근거 파악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46